

2003년도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세부내용-

1. 자동차 보험약관 체계 개정(알기 쉬운 자동차보험 약관)

가. 계약자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채택

① 계약자를 귀하로, 보험회사를 저희 회사로 명기하고 일부 대화체 서술 방식 채택.

② 현재의 조문식 약관체제를 설명식으로 변경·도표 활용, 알기 쉬운 용어 채택, 필요시 예시내용 추가.

③ 도입부에 계약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요약·정리하여 기술(자동차보험 가입조건, 종목별 보상내용, 보험회사의 책임시기,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등.

나. 보험요율서 기재내용 중 중요사항 삽입

보험가입대상, 보험료 산출방법 등 요율서에 기재된 주요내용 중 계약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약관에 명시.

다. 소비자 편익위주로 기술

담보내용, 보험금 청구사항 등을 간편화하고 일괄적으로 기술하여 보다 쉽게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함.

2. 담보별 보상범위 확대

가. 대인배상Ⅱ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등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시 기명피보험자(차량보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이 되도록 함.

나. 대물배상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현재 면책대상인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선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한 보상

다. 자기신체사고에서 자연재해 피해 보상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도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하게 이를 보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보상

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범위 확대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신체담보 보험금에서 제외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는 자기신체 사고담보로 보상

현 행	개 선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등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시에는 대인배상Ⅱ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음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등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시에도 기명피보험자(차량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확대
 현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등과
 동거여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와 관
 계없이 보상되도록 함.

현 행	개 선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보상대상자 (피보험자)를 달리함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 기명 피보험자등과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상되도록 함

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
 향 삭제
 피보험자의 음주행위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는 직
 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보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이라도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확대
 타물체와의 충돌외 자기차량 내에서의 풍력에 의
 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선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도 보상

3.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교통사고 피 해자 보장 강화)

가. 대인배상 사망자, 유족위자료 상향
 연령에 따라 현행 2천 8백만원, 3천 2백만원인 위
 자료 수준을 4천만원, 4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현 행	개 선
사망위자료 20세이상 60세미만 3천2백만원 기타 연령 2천8백만원	사망위자료 20세이상 60세미만 4천5백만원 기타 연령 4천만원

노동능력상실율은 실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툼이 있을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에서 판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함.

현 행	개 선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 다. 선택진료비 보상 선택진료비도 관련 지급기준상 보상 근거 마련.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을 시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에서 판정하는 내용 포함 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선택진료비는 약관상 치료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차요 불분명함 현재 대차료는 대여자 80%만 보상하였으나 100%보상하도록 하고 수리 기간내에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선택진료비를 치료비 범주에 포함하여 관련 범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상 대차요금 및 실임차료의 100%보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대차료는 실비의 80%만 보상 부품조달기간 및 부당 수리지연기간은 대차료 산정시 제외됨	대차료 전액에 대해서 수리 지연기간을 포함하여 수리 완료시까지 지급하도록 함

